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3 선고 2015나15053(본소), 2015나15060(반소) 판결 [건물철거
및 토지인도 등 · 건물철거 등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3 선고 2015나15053(본소), 2015나15060(반소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13 선고 2013가단12189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C

변론 종결 2015. 8. 18.

판결 선고 2015. 10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13. 선고 2013가단12189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

한다)에게,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9, 20, 21, 22, 23, 3, 2, 1, 14, 16, 17, 18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및 (나) 부분 7.5㎡를 철거하고,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, 20, 21, 22, 23, 3, 2, 1, 18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3.3㎡를 인도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, 1, 14, 16, 17,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4.2㎡를 인도하고, 2006. 3. 28.부터 위 선내(가) 및 (나)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9,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제1심 판결문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가. 제3면 5줄

"매수한 후"를 "매수하여 같은 해 7. 14. 인도받은 후"로 고쳐 쓴다.

나. 제5면 16줄

"이용하였던 것으로 볼 때"를 "이용하였던 점, 건물의 처마, 추녀는 전통한옥에서 시공되는 구조물로서 대수선 공사 이후의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대수선 공사 중 처마, 추녀를 일부러 새로 증축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"로 고쳐 쓴다.

다. 제5면 18줄

"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" 다음에 "(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 중 지붕에 목조트러스, 아스팔트 원글 마감재를 사용하였다거나 외벽을 좀 더 바깥쪽으로 내다 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

뒤집어 망 B이 대수선 공사 당시 이 사건 추녀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한편 위 추녀 부분이 2001년 이후 설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,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"를 추가한다.

라. 제6면 11줄과 18줄

"4) 피고는"과 "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"를 "4) 원고는"과 "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"로 각 고쳐 쓴다.

마. 제6면 18줄과 19줄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
"5) 원고는, 망 B이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토지 경계에 맞게 내다 쌓은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측량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후의 망인의 이 사건 (가), (나)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토지 경계 쪽으로 내다 쌓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"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강태훈

판사오연수

판사김동기

별지